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회 계 연 도 결 산

검 토 보 고 (I)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개요 및 총괄 검토)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 문 위 원 정경윤

전 문 위 원 연광석

【 목차별 작성 입법조사관 】

구분	목차	입법조사관	연락처(6788-)
I 권	결산 개요 및 총괄 검토	김영수	5503
II 권 (제 1 차 관 소 관)	기획조정실	정민주	5494
	복지정책관	박지호	5497
	복지행정지원관		
	연금정책관	김태엽	5510
	사회서비스정책관	박지호	5497
	인구아동정책관	조서연 허기원	5500 5498
	노인정책관	양승민	5499
	장애인정책국	김대명	550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박지호	5497
III 권 (제 2 차 관 소 관)	보건의료정책관	정민주	5494
	공공보건정책관	이성임	5509
	한약정책관	최은영	5496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포함)	김영수 박지호	5503 5497
	건강정책국	조서연	5500
	정신건강정책관	허기원	5498
	보건산업정책국	김태엽	5510
	첨단의료지원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양승민	5499

【 목 차 】

I. 결산 개요

1. 총괄	1
가. 세입세출결산	1
나. 기금 결산	3
다. 총지출 결산	4
2. 세입세출결산	5
가. 일반회계	5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0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7
3. 기금 결산	44
가. 국민연금기금	44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53
다. 응급의료기금	63
4.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현황	72
5.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업 현황	75
6. 의무지출사업 현황	78
7.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84

II. 총괄 검토

1. 의료 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	89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누적에 따라 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92
3. 소관 공공 모바일 앱 검토	97
가. 공공 모바일 앱 성과평가 제도의 개요	97
나. 공공 모바일 앱 기기 접근성 제약 및 사용자 평가 저하 등 품질 개선 노력 필요	99
다. 개인 의료기록에 관한 다수 공공 앱에 대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및 통합적 서비스 필요	103
4. 소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 검토 ...	105
가. 장애인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 제도 개요	105
나. 장애인의무고용 의무 위반 공공기관 시정 필요	116
5.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검토	109
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109
나. 경영평가 결과	111

I. 결산 개요

1. 총괄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각각 5,131억 5,200만원, 2,068억 3,2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7,199억 8,400만원임.

- 총 징수결정액 1조 8,918억 8,700만원은 일반회계 1조 6,429억 9,400만원, 특별회계 2,488억 9,400만원으로 구성
- 총 수납액 1조 3,443억 500만원은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수납액 등 1조 1,033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환자진료병원수입 등 2,409억 6,100만원으로 구성
- 총 미수납액은 5,423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미수납액 등 5,356억 1,000만원과 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66억 9,700만원으로 구성
- 불납결손액 52억 7,500만원은 차관병원¹⁾ 파산, 무재산자 사망 등에 따른 것임.

1)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및 장비보강을 해외 차관으로 지원받은 병원을 말함.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C/A)	(C/B)		
계	719,984	1,891,887	1,344,305	186.7	71.1	5,275	542,307
☐ 일반회계	513,152	1,642,994	1,103,344	215	67.2	4,040	535,610
☐ 특별회계	206,832	248,894	240,961	116.5	96.8	1,235	6,697

2) 세출

-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8조 5,278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등을 모두 합한 예산현액은 68조 7,280억원임. 이 중 67조 5,007억원(98.2%)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26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009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	68,527,771	68,728,012	67,500,736	26,374	1,200,902	98.2
☐ 일반회계	66,737,992	66,931,503	65,743,891	23,422	1,164,190	98.2
☐ 특별회계	1,789,779	1,796,509	1,756,845	2,952	36,712	97.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00,789	1,600,789	1,580,815	353	19,621	98.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8,990	195,720	176,030	2,599	17,091	89.9

나. 기금 결산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3개 기금의 기금운용규모 실적은 총 195조 8,482억원임. 당초 158조 8,395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37조 88억원(23.3%)이 증가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수정 계획액(A)	실적(결산액)(B)	집행률(B/A)
계	158,839,463	195,848,221	123.3
□ 국민연금기금	153,527,010	190,638,590	124.2
□ 국민건강증진기금	4,739,455	4,523,804	95.4
□ 응급의료기금	572,998	685,827	119.7

* 기금운용규모 기준

* 기금은 수납액(자금조달)과 지출액(자금운용) 규모가 일치함.

다. 총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현황을 총지출²⁾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총 109조 1,830억원,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조 2,797억원이며, 이 중 110조 9,629억원(98.8%)이 집행되었고, 37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2,798억원은 불용됨.

< 2023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집행률 (C/B)
총 지 출	1,091,830	1,122,797	1,109,629	370	12,798	98.8
○ 예 산	681,447	683,449	671,177	264	12,009	98.2
- 일반회계	663,653	665,588	653,712	234	11,642	98.2
- 특별회계	17,794	17,861	17,465	30	367	97.8
○ 기 금	410,383	439,348	438,453	106	789	99.8
- 국민연금기금	371,216	400,067	399,287	80	701	99.8
- 국민건강증진기금	36,715	36,762	36,664	23	76	99.7
- 응급의료기금	2,451	2,518	2,501	4	13	99.3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제외

- 내부거래 : 1조 4,280억원

* 일반회계(채특회계·기금전출) 3,727억원, 특별회계(연기금 전출) 104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계정간전출 예수금상환) 7,249억원, 응급의료기금(예수금상환) 3,200억원

- 보전지출(여유자금, 채권매입 등) : 150조 9,580억원

* 국민연금기금 150조 7,09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325억원, 응급의료기금 1,157억원

2)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의 실질적인 지출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모든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를 더하고(단, 금융성기금은 제외함), 정부 예산 및 기금 간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여 산출함.

2. 세입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132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6,430억원이며, 이 중 1조 1,033억원(67.2%)이 수납되고, 40억원(0.2%) 불납결손, 5,356억원(32.6%) 미수납됨.

징수결정액의 94.1%인 1조 5,455억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이 중 69.0%인 1조 662억원이 수납됨.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513,152	1,642,994	1,103,344	4,040	535,610	32.6
재산수입	10,143	34,499	20,694	1,056	12,749	37.0
경상이전수입	501,052	1,600,986	1,081,417	-	519,569	32.5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957	1,215	1,215	-	-	-
관유물 매각대	-	17	17	-	-	-
용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	6,275	-	2,984	3,291	52.4

나) 불납결손 명세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불납결손액 40억 4,000만원은 차관지원 의료기관 파산 및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것임.

< 2023회계연도 불납결손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 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4,040	
재산수입	1,056	
- 전대차관 이자수입	1,056	차관지원 의료기관 파산등에 따른 채권 소멸 등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84	
- 전대차관원금회수	2,984	차관지원 의료기관 파산등에 따른 채권 소멸 등

- 이 중 전대차관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 등에 의료기관 설립 및 장비보장을 지원한 차관지원사업³⁾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누적 징수결정액(도입시 원금 및 누적이자) 5,041억원 중 총 4,669억원이 수납되었고, 43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29억원⁴⁾을 불납결손함.

다)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5,356억 1,000만원은 재산수입

3) 차관선 : OECF(일본해외협력기금) 1,027억원,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591억원, KFW(독일재건은행기금) 38억원(차관도입시 환율 적용한 최초 계약금액 기준)

4) 불납결손 사유

- 파산선고 및 동시파산폐지(12개 기관) : 의왕고려병원, 송탄경기병원, 의정부신천병원, 고흥병원, 김해복음병원, 부여병원, 새군위병원, 안강성베드로병원, 제천병원, 조치원제일병원, 하동하남병원, 합천한성병원, 경주병원, 마산성모병원, 삼천포성심병원, 세종(진주정신)병원, 영천성베드로병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패소(1개 기관): 의령고려병원

127억 4,900만원, 경상이전수입 5,195억 6,9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
금회수 3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됨.

-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체
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발생함.

< 2023회계연도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535,610	
○재산수입	12,749	
- 관유물대여료	1	납기일 미도래
- 전대차관 이자수입	974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파산등으로 채무 이행 불가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774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예산 미확보
○경상이전수입	519,569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0,202	납기미도래 및 분할납부 중, 징수유예,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 변상금 및 위약금	18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 가산금	61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 불명 등
- 기타경상이전수입	479,288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반납예산 미확보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291	
- 전대차관원금회수	3,291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파산등으로 채무 이행 불가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66조 7,38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0억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66조 9,315억원임.

이 중 65조 7,439억원(98.2%)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234억원(0.03%)이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1조 1,642억원(1.7%)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주	이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66,737,992	25,957	167,554	19,642 △19,642	77,153 △77,153	66,931,503	65,743,891	23,422	1,164,190
기초생활 보장	16,405,912	1,100	-	△1,512	34,614 △34,614	16,405,500	15,694,013	50	711,437
취약계층 지원	4,585,437	532	-	-	186 △186	4,585,969	4,582,769	1,023	2,178
공적연금	48,918	447	-	-	-	49,365	49,363	-	2
사회복지 일반	541,390	3,520	-	2,738 △355	3,468 △3,468	547,293	531,087	4,667	11,540
아동· 보육	9,540,526	1,052	167,554	8,637	31,242 △31,242	9,717,769	9,699,653	1,164	16,951
노인	22,423,719	75	-	△8,652	4,836 △4,836	22,415,142	22,076,257	49	338,836
보건의료	2,602,730	18,705	-	8,267	2,788 △2,788	2,629,702	2,557,343	16,449	55,910
건강보험	10,589,360	525	-	△9,123	20 △20	10,580,762	10,553,406	20	27,336

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사용된 예비비 지출 소관이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로 이관됨

나) 이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이용⁵⁾ 규모는 총 196억 4,200만원임.

주요 이용 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86억 3,700만원,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에 67억 5,500만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 27억 3,8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15억 1,200만원이 이용 증액되었고,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에서 △91억 2,300만원, ‘기초연금지급’에서 △86억 5,200만원이 이용 감액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계	19,642 △19,642		
기초생활보장	△1,512	(의료급여)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중국발 방역강화조치 시행 관련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지원) 재원 마련	△1,512
사회복지일반	2,738 △35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350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엘리엇, 메이슨 중재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에 따른 법률자문 및 행정비용 확보	2,738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5
아동·보육	8,637	(아동수당 지급)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 급여 예산 부족으로 기초연금 지급에서 8,637백만원 이용	8,637
노인	△8,652	(기초연금지급) 엘리엇, 메이슨 중재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에	△8,652

5)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이른바 입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일반적으로 예산총칙에 규정)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음.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다른 법률자문 및 행정비용 부족분 이용(△15백만원), 아동수당 수급자 규모 증가에 따른 부족분 이용(△8,637백만원)	
보건의료	8,267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 (1,512)	1,5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	6,755
건강보험	△9,123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6,400백만원), 엘리엇 후속조치 및 메이슨 중재 추가절차 대응을 위한 정부대리로펌 자문료 부족(△2,723백만원)	△9,123

다) 전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⁶⁾은 총 771억 5,300만원 규모임.

부문별 주요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복지 및 자활급여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346억 1,400만원이 전용(증·감)되었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 예산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해 아동·보육 부문에서 312억 4,200만원이 전용(증·감)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77,153 △77,153		
기초생활보장	34,614 △34,614	(긴급복지) 긴급복지 사업비 부족분을 의료급여에서 확보(+23,878), 의료급여 국외여비 부족 해소 위해 긴급복지 국내여비 불용예상액으로 전용(△5)	23,878 △5
		(자활사업)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으로 전용(△7백만원), 자활근로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 사업에서 전용(+10,662백만원)	10,662 △7
		(생업자금 및 이차 및 손실보전금)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조기집행완료에 따라, 자활사업 및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으로부터 각각 7백만원 전용	14
		(의료급여) 의료급여 사업(△23,878)에서 긴급복지 예산 부족분 전용, 의료급여 사업(△10,662)에서 자활급여 예산 부족분 전용, 일반연구비(△28)에서 수용비 부족분 확보(+28), 긴급복지에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5)	33 △34,5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조기집행에 따른 필요예산 7백만원 전용	△7

6)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이른바 행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간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사용 등 시급한 필요성, 필수경비 충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취약계층지원	186 △186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장애인지원관리 운영비로 △36백만원 자체 전용, 장애인정책 등 주요 선진사례 조사 등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장애인지원관리 국외여비로 △15백만원 자체전용	△51
		(장애인연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 선진사례 방문 국외출장 4백만원 전용, '장애인의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30백만원 전용	△34
		(장애인지원관리) 장애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 비용 부족분 전용 : +36백만원, 공무국외 출장경비 부족분 전용 : +18백만원,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비 부족분 전용 : +45백만원	10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상용임금 부족으로 사업간 전용(△9), 전시체험장 가상체험 VR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일반용역비(+5)로 전용	5 △1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국가승인통계자료 분석 및 건강검진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 당연지정 법률개정 관련 해당기관 사업설명회 등 사업비 부족으로 79백만원 전용	79 △7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연구 집행잔액을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비 부족분으로 전용	△15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제16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관련 국외여비 부족분(+1)을 수용비(△1)로 전용함	1 △1
사회복지일반	3,468 △3,468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차세대시스템 3차 미개통으로 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확보 필요	400 △4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진단 조사용역 및 감리, 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감리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전용	690 △69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대 주요 국정과제(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국외 선진지 공무 국외출장 예산 재원 마련	△30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전용	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50 △2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7
		(복지급여 사후관리) 국내여비에서 '보조금 부조리 신고 센터' 홍보 포스터 인쇄비(일반수용비),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을 위한 임차료로 전용	24 △24
		(본부 인건비) 공무원고용부담금(150백만원), 글로벌백신허브	150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화추진단 상용임금 등(△46백만원), 청년인턴 일용임금 등(△354백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전용(△220백만원), 예산성과금(△6백만원)	△77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청원경찰 임금 부족분을 ‘본부 인건비’에서 확보	220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기타운영비 연말 집행 잔액 부족(+1), 본부 국관 기본경비 자체전용(2-1차) 조정(△30)	1 △3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국관 기본경비 내 부족예산과목 해소	401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부족에 따른 부내 예산 조정	104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62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1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15 △2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330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사보위 사무국 국내여비 등 부족에 따라 자체 전용 실시	17 △13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43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인사청문회 3회 개최, 코로나19 파견 등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예산 부족으로 세부사업 내 자체전용	5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7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예산 부족분 조정(△15)	△15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포스트 코로나, 비전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따라 일반수용비(△90)를 일반연구비(90)로 전용,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 코로나19 대응 총괄 백서를 위해 일반수용비(△100)를 일반연구비(100)로 전용, 기관운영 등을 위한 예산 부족분 전용(△2,2), 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전용(△10)	192 △202
		(글로벌백신헤브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 국관 기본경비 부족분 및 기간제 근로자(에디터) 채용 인건비 부족분을 본부 인건	46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비 등에서 확보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국·관 기본경비 부족분 전용	15 △59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으로 전용	△1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등 예산 부족분 전용	3 △2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본부기본경비(7011) 부족으로 18백만원	3 △18
		(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본부기본경비(7011)부족으로 20백만원, 소록도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부족으로 27백만원	27 △47
		(정책기반 구축) 비대면진료 및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 등	352 △269
		(국제협력관리) 국제회의 증가로 국외여비 추가 재원 필요	203 △220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정보보안 컨설팅 강화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여비로 전용	10 △1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본부 국내여비 부족분(△6백만원), 직책수행경비 부족분(0.5백만원), 소록도병원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부족분(△2백만원)	1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국제협력관 국외여비 부족분 전용(△4백만원)	△4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직제개편으로 인한 월정 직책수행경비 조정 등	3 △3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통합돌봄추진단 이관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7백만원)	7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7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관 운영비 부족	15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통합돌봄추진단 이관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14백만원)	14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 부족분 조정 등	24 △14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37 △11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각 국.관 기본경비 절감분 자체전용(국내여비 28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백만원)	28 △1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비총액)) 필수의료 지원 및 건강보험	88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보장성 강화대책 수행, 의료전달체계 추진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	△20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부족분 총당	32 △2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국내여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국관기본경비 긴급소요 및 부족분 활용 등을 위한 절감재원 마련 및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족분 마련	31 △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20대 주요 국정과제(사회서비스 고도화)추진을 위한 국외 공무 출장 예산 재원 마련	50 △30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상반기 예산성과금 및 국관기본경비 조정	6 △1
		(나눔문화확산) 국내·국외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확보	7 △7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원근로자 등 퇴직급여, 고용부담금 추가 소요발생	40 △40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전용	△7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7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비대면진료 및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예산 전용	△3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디지털헬스케어분야 국제기구(GDHP) 회의 참석을 위한 부족예산 마련	15 △13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유공자 표창,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추진	10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부족 여비 확보	31 △21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30
아동·보육	31,242 △31,242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분 총당	△16,6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부족분을 ‘어린이집 확충’ 등 3개 사업에서 재원 마련	31,16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분 총당	△10,668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분 총당	△3,900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업무 수행	32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에 따른 법령, 매뉴얼, 지침 제작 관련 일반수용비와 회의실 임차료 부족	△3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사업(아이행복 캠페인 확산 및 유튜브 활성화 등)의 정상적 추진 및 불용 최소화	42 △42
노인	4,836 △4,83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전용	△3,700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분(4,815백만원), 노인의날기념행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소유분 증가(19백만원), 국내여비 부족(3백만원)	4,834
		(기초연금지급) 23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전용(△1,136백만원), 여비 부족분 총당(+2백만원)	2 △1,136
보건의료	2,788 △2,788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 예산 부족 등	576 △133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비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160백만원 전용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신청 등 수요량 증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282백만원 전용	△44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 후속 2단계 사업('25~'28)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50 △50
		(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기본경비 부족분 총당	113 △7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출장업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8 △8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출장 증가에 때란 부족한 여비 확보	19 △19
		(공공조직원은행 운영) 장기·인체조직 관련 업무 지침 제작, 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 부족분 총당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13 △13
		(제대혈 공공관리) 제대혈 관련 지침 제작 비용 부족분 총당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2 △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1,093)	1,093 △1,093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등 국외여비 조정(△51), 보건산업 사업수행 관련 일반수용비 조정(△30)	△8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R&D))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한 불용예상액을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으로 전용	△500
		(제약산업 육성지원) 보건산업 정책사업관리 국외여비 부족분	△25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일부 총당을 위한 전용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2호점 구축 예산 부족분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R&D)(500),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R&D)(264)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	764
		(마이크로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R&D)) 신규과제 재공고로 인한 지연으로 1개월분 연구비를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으로 전용	△264
		(소록도병원관리)한센환자치료-공공요금(4533-301-210-02)부족으로 100백만원 증액	△100
		(한센환자치료)한센환자치료-공공요금(4533-301-210-02)부족으로 50백만원 증액	150 △50
건강보험	20 △20	(보험정책사업관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자체전용	20 △20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234억 2,2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3%)임.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공사 및 감리 완료시기 미도래로 52억 1,000만원,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사업의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이월 47억 8,800만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공사 및 감리 완료시기 미도래로 38억 500만원,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에서 엘리엇 및 메이슨의 중재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 등에 따라 정부대리로펌 자문료, 중재판정부 행정비용 등 일부 이월로 17억 5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23,422		
기초생활보장	50	(자활사업) 자활 인프라 기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50
취약계층지원	1,023	(장애인지원관리) 연구용역 2건 계약기간 미도래	115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 2건 계약기간 미도래	73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76
사회복지일반	4,667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연구용역 계간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8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아동 관련 제도 시행시기 조정으로 기능개선 수요조사지연으로 사업공고 지연(24.1월 계약)	95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사업 및 SI활용 초기상담시스템 구축 사업 미도래 등 이월	1,199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엘리엇 및 메이슨의 중재절차 및 후속조치 지속 등에 따라 정부대리로펌 자문료, 중재판정부 행정비용 등 일부 이월	1,705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차년도 계약기간 유지	129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1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금 발생((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23.10~'24.4.))	5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6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5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4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63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3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5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7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코로나19 대응 백서마련 연구용역 계약기간('23.11월~'24.6월) 종료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액 이월	20
		(글로벌백신헤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23)	23
		(보건복지정보보호안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구매 물품 납기 및 정보화사업 종료일 미도래	234
		(정책기반 구축) '정책기반 통계생산' 사업의 조달수수료 이월	2
		(정책연구개발(R&D))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구비 이월	70
		(국제협력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일반연구비 이월	32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 추진기간 연장	48
아동·보육	1,164	(보육사업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사업 등 사업완료 미도래	66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살원인 분 석을 통한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23.12.5.~'24.4.30.)에 따른 이월	10
		(가정위탁 지원·운영)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기간 미도래	163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연구용역 사업기간(~'24.2월) 미도래 로 인한 이월	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2건) 및 계약체결 진행 중(1건)으로 일반연구비 이월(239백)	239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73
노인	49	(기초연금지급) 홍보 계약 연장에 따른 일반용역비 이월	3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연구용역과제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과제 발생	14
보건의료	16,449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구축사업 진행 일정을 고려한 계약 체결 및 구축 과업 추가 등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이월	4,788
		(소록도병원관리) 녹생리 3번동 내진보강, 소방설비 및 보수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1,282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공사 및 감리 완료시기 미도래	5,210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공사 및 감리 완료시기 미도래	3,80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연구용역 1건 연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일반연구비 이월	10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연구용역(1건) 계약기간 미도래	100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사업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특별점검 등 긴급 수행으로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및 작업수행이 중단·지연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되어('23.12 → '24.2) 이월	310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사업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계약잔금 이월	180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위탁기간 계약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비 잔금 이월	9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시설관리팀 추진 사업(UPS 축전지)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515), 감리비(2) 이월	517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36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98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연구용역 계약기간에 따른 이월	24
건강보험	20	(보험정책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20

바)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1조 1,642억원(예산현액 대비 1.7%)임.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에서 진료비 집행잔액 등으로 7,000억 3,800만원,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지자체 집행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불용이 3,305억 8,2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 집행잔액으로 480억 6,700만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의 집행잔액 173억 1,900만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등으로 113억 5,700만원 등이 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164,190		
기초생활보장	711,437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3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등	11,357
		(자활사업)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2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타사업으로부터 전용하였으나 하반기 금리 하락으로 인해 불용 발생	5
		(의료급여)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진료비 집행잔액	700,038
		(긴급복지) 운영비 집행잔액	4
취약계층지원	2,178	(노숙인등 복지지원) 집행잔액 등	81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21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7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연구용역 집행 잔액	3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집행잔액 8백만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관 안내 VR영상 및 기능개선 용역 낙찰차액 2백만원, 유류비 집행잔액 2백만원 등	22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장애인지원관리) 집행잔액	7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3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19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16), 자치단체경상보조 집행잔액(652)	769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집행잔액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8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66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경상경비(수용비, 임차료, 여비 등) 집행잔액 발생	5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집행잔액(15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인건비성 경비(178),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1),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비 집행잔액(19)	34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상용 SW 구매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집행잔액	50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 인정 신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신청 및 인정 건수 등에 대한 예측 불가	379
공적연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집행잔액	2
사회복지일 반	11,540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집행잔액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정보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관리 예산 집행 잔액	1,440
		(나눔문화확산) 나눔문화확산홍보 용역 낙찰차액 21백만원 및 집행잔액	21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긴급돌봄 한시사업('23년~'25년)은 코로나19 및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	20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2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년 본 예산 불용금액은 116백만원으로 바우처시스템, 개별시스템 미통합에 따른 교육 등 미 실시 76백만원, 바우처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40백만원, 220백만원은 '22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세부사업)의 이월 예산으로 공고 3회 유찰되어(사업단 무응찰) 불용 처리됨	336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집행잔액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집행잔액	42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	30
		(사회복무제도지원) 병무청 배정 계획인원과 실배치 인원 차이 및 상병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계급별 보수 지급으로 차액 발생	13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경북 사회서비스원 미설치로 인한 운영비 불용(968백만원) 및 집행잔액(3백만원)	971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보건복지 상담 센터) 상담사 휴·퇴직에 따른 인건비(352) 및 인건비성 경비(101), 연구용역 낙찰차액(4) 등 집행잔액	458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1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189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8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5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3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6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불용	2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6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집행잔액	6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2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0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3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집행잔액	3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43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16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의료보장심의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원근로자 퇴직, 휴직 등 결원발생 후 채용 전까지 공백	101
		(복지급여 사후관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
		(본부 인건비) 인건비 집행잔액	5,551
		(소록도병원 인건비) 집행잔액	41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정현원 차이, 기준호봉 차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0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4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6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0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1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5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한의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3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코로나19 중수본 기본경비 집행잔액	14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코로나19 중수본 기본경비 집행잔액	19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1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0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6
		(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정책기반 구축) 연구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61
		(정책연구개발(R&D))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40
		(국제협력관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임차료,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69
아동·보육	16,9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사무국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534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집행잔액	35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잔여수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2개소 미선정, 연구용역 입찰 차액 등	333
		(인구교육추진지원) 종교단체(원불교) 사업 미참여 30백만원, 정책연구비 계약 차액 3백만원	3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교부금액 일부 조정	3,98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22년 4분기 개소한 일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전담인력 채용 및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자립지원 사업비에 불용 발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시스템 개발 일정 소요 등으로 사업 시행시기가 예정('23.7월)보다 지연됨에 따라('23.12.1.시행) 의료비 지원금 불용액 발생	1,389
		(가정위탁 지원·운영) 지자체 실집행액 고려하여 교부금액 조정,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53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지연으로 인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4,67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등 집행잔액	3,00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홍보대행사 입찰 시 낙찰차액(35백만원), 사업운영에 따른 집행잔액(13백만원)	48
		(어린이집 확충) 신축사업 수요 감소 및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 사업 편중에 따라 집행액 부진으로 집행잔액 발생	249
		(보육사업관리) 계약 낙찰 차액, 홍보비 등 집행 잔액	30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수용비 및 연구용역비 계약과정 중	15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과 장기저축이 강제되는 사업특성 등으로 예상보다 가입 및 저축이 저조하여 교부금액 일부 조정	2,300
노인	338,83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여 2023년 신규입국자 귀국일정 지연되었으며 그로인한 특별생계비 및 안산시 부담금 불용 발생	506
		(기초연금지급) 지자체 집행소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급여 예산 불용(330,248백만원) 및 집행잔액(334백만원) 불용	330,58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잔액	24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공무직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용부담금 집행 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집행 잔액	7,313
		(노인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81
보건의료	55,910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연구비 등 집행잔액	17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3백만원 및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연구비 집행잔액 4백만원	27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인터넷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48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289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1차공사 보험료 등 준공정산)	1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 집행잔액	5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보전금 및 기관운영비 집행잔액	42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9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4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개월 불용	216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낙찰차액 및 구축사업 공개SW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1,814
		(소록도병원관리) 집행잔액	48
		(한센환자치료) 집행잔액	49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집행잔액	2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신규과제 선정지연에	893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다른 집행잔액 등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집행잔액	61
		(제약산업 육성지원) 일반용역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35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78
		(생명윤리및안전관리)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경상경비 절감(34)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8)	42
		(제대혈 공공관리) 연구자의 연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 제대혈정보센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 발생	41
		(K-Medi 융합 인재 양성사업(R&D)) 연구자의 연구비 감액 요청 및 집행잔액	90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전문위원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미집행액	21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근거 법률 국회 논의중으로 인한 불용액, 공중보건장학제도 집행잔액	414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수행기관 선정 결과 집행잔액	1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사업대상자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257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연구용역 및 사업 집행잔액	3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R&D)) 집행잔액	4
		(국가 뇌조직 연구관리 지원체계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
		(해외환자 유치 지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6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잔액	3
		(한의학의 해외진출지원) 집행잔액	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
		(한의학산업육성) 집행잔액	4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 2개과제 미선정(과제공모 두차례 진행하였으나, 응모과제 탈락)	225
		(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집행잔액	6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연구용역 낙찰 차액	11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등 인건비	48,067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지원(1,212),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6,053), 거점전담병원 운영지원(30),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22),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확충(107),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643) 등 집행잔액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계약 낙찰차액 및 대구센터 이전사업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불용	69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정현원 차이, 기준호봉 차이 집행잔액(890), 연말 원인행위 조정 집행잔액(44), 기타 집행잔액(86)	1,020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집행잔액(90) 및 낙찰차액(15)	10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권역센터 공사지연으로 권역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액(58백만원) 불용, 세종 권역센터 리모델링*으로 설치비(신축) 중 일부(650백만원)만 지원 *설치비 1,250백만원 중 리모델링의 경우 650백만원 지원	658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상담사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59백만원)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25백만원)	84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집행잔액	570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집행잔액	6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집행잔액	18
		(연구중심병원육성(R&D)) 집행잔액	1
		(약물전달 치료기술 개발 사업(R&D)) 신규과제 선정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84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사업(R&D)) 신규과제 재공고 등 선정 순연에 따른 집행잔액	150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국외출장여비 미사용	3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공사비 집행잔액(1차공사 보험료 등 준공정산)	12
건강보험	27,336	(보험정책사업관리) 계약 차액 발생 및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	2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공무원 근로자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 운영비 42백만원 집행불가, 그 외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61
		(독립적검토절차 지원) 연구용역 집행잔액 등(독립적 검토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적었음)	2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사업비(민간경상보조) 실집행 저조로 기교부 보조금 반납 및 잔여 예산 미교부,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9,905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1~12월 국가부담분 보험료 납부 후 잔액 불용	17,319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7억 9,600만원, 징수결정액은 4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32억 9,200만원(75.9%)이 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796	4,336	3,292	-	1,044	24.1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1	369	269	-	99	26.8
기타경상이전수입	-	3,283	2,339	-	945	28.8
융자금회수	685	685	685	-	-	-

나)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10억 4,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임.

< 미수납 명세 및 사유 >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1,04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9	
- 기타재산이자수입	99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945	
- 기타경상이전수입	945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등

2) 세출: 해당사항 없음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보건복지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과거 장애인차량 LPG지원 과오지급금 환수 추진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은 21억 1,600만원이며, 이 중 300만원(0.2%)이 수납되고, 8억 7,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2억 3,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	2,116	3	1,235	878	41.5
기타경상이전수입	-	2,116	3	1,235	878	41.5

* '01년 LPG 세율인상에 따라 '01.7월부터 LPG차량 소유 장애인(장애등급 무관)에 대해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07.1월부터 일부 장애등급(4~6급) 지원 중단하여 '10.7월부터 전면 폐지함. 지원중단 이후 사망, 세대분리자, 지원 중지자 등에 대해서 착오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여 환수 추진 중

나) 불납결손 및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21억 1,600만원은 모두 LPG지원 과오지급금 환수 추진액 중 미수납액임⁷⁾.

7) - '08.9월 최초 납입고지 이후, 총 고지액 101억원(43,577명) (2013년말 확정액 기준) 중 2020년말까지 80억원(36,438명) 회수, 21억원(7,139명) 미수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수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대상자들의 불만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단,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환수대상에서 제외)

<미수납액 추이> 2015년말 28.63억원, 2016년말 23.41억원, 2017년말 21.35억원, 2018년말 21.27억원, 2019년말 21.25억원, 2020년말 21.23억원, 2021년말 21.20억원, 2022년말 21.16억원

- 202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8억 7,800만원은 채납자의 재력 부족 및 납부저항에 따른 것임.
- 202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12억 3,5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판례⁸⁾를 고려하여 국가패소 가능성 및 패소 시 투입 행정비용 등을 감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⁹⁾에 따라 4~6급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음.

2) 세출: 해당사항 없음

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부당이득금]

갑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이라는 목적만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170억 4,600만원, 징수결정액은 403억 9,800만원이며 이 중 376억 2,800만원(93.1%)이 수납됨.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17,046	40,398	37,628	-	2,770	6.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707	649	-	58	8.2
기타경상 이전수입	17,046	39,691	36,979	-	2,712	6.8

나)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미수납액 27억 7,0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미수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6,007억 8,900만원이고, 그 중 1조 5,80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고, 196억 2,100만원(1.2%)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600,789	-	1,600,789	1,580,815	353	19,621
취약계층지원	4,834	-	4,834	4,683	16	135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4,834	-	4,834	4,683	16	135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 생활 지원	4,834	-	4,834	4,683	16	135
사회복지일반	422,627	-	422,627	408,607	51	13,968
사회복지기반조성	422,627	-	422,627	408,607	51	13,968
사회복지전달체계	186,760	-	186,760	184,795	51	1,9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5,867	-	235,867	223,812	-	12,055
아동·보육	286,568	-	286,568	286,257	-	31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86,568	-	286,568	286,257	-	311
방과후 돌봄 지원	286,568	-	286,568	286,257	-	311
노인	608,695	-	608,695	604,249	144	4,302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노인생활안정	553,930	-	553,930	549,801	144	3,985
노인돌봄서비스	501,981	-	501,981	498,029	144	3,808
장사시설설치	51,949	-	51,949	51,772	-	177
노인의료보장	54,765	-	54,765	54,448	-	317
노인요양시설확충	54,765	-	54,765	54,448	-	317
보건의료	278,065	-	278,065	277,018	142	905
공공보건의료확충	197,595	-	197,595	196,548	142	90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9,644	-	29,644	28,978	-	666
지방의료원 등 육성	151,115	-	151,115	150,868	142	105
의료취약지 지원	16,836	-	16,836	16,702	-	134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8,514	-	28,514	28,514	-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28,514	-	28,514	28,514	-	-
보건산업육성	51,956	-	51,956	51,956	-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51,956	-	51,956	51,956	-	-

나) 전용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은 총 6,500만원 규모임.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65 △65		
아동·보육	23 △23	○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침 책자 제작 등 소요 증가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연구비 23백만원 자체전용	23 △23
노인	8 △8	○ (장사시설설치) 국외여비 부족	8 △8
보건의료	35 △35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BTL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 임대개시 후 5년 경과하여, 수익률 조정 및 분기별 임대료 상향을 위한 전용,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전용	35 △35

다) 다음 연도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3억 5,300만원 규모로, 주로 연구용역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임.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353		
취약계층지원	16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3.5.17.~'24.4.1.)에 따른 잔금 이월	16
사회복지일반	5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45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6
노인	14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계약기간 미도래	144
보건의료	142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연구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142

라)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은 196억 2,100만원임.

주요 불용 내역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20억 5,5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38억 800만원 등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9,621		
취약계층지원	135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135
사회복지일반	13,96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보조사업 도입 시, 현장 의견수렴 진행 및 공모 절차 등으로 수행지역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 대비 국비 교부 차질	12,055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12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1,901
아동·보육	311	(지역아동센터 지원) 집행잔액	56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집행잔액	255
노인	4,3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잔액	3,808
		(장사시설설치) 집행잔액	177
		(노인요양시설 확충) 집행잔액	317
보건의료	905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집행잔액	666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영주적십자병원 지원사업 집행잔액	105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불용	134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¹⁰⁾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889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0억 4,300만원임. 이 중 2,000억 3,800만원이 수납(99.0%)되었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188,990	202,043	200,038	-	2,006	1.0
국립재활원	61,730	66,889	66,818	-	72	0.1
국립정신건강센터	46,734	48,030	47,182	-	848	1.8
국립공주병원	18,150	20,775	20,558	-	217	1.0
국립나주병원	23,609	25,955	25,410	-	545	2.1
국립부곡병원	22,028	22,782	22,567	-	215	0.9
국립춘천병원	16,739	17,612	17,502	-	110	0.6

10) 국립재활원 및 5개 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공주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나)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20억 600만원은 대부분 진료비 청구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수액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 수 납 사 유	
계	2,006		
영업수입	1,951	○ 국립재활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72
		○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793
		○ 국립공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217
		○ 국립나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545
		○ 국립부곡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215
		○ 국립춘천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110
영업외수입	55	○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송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 미수액	55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889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이·전용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957억 2,000만원임. 이 중 1,760억 3,000만원(89.9%)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25억 9,900만원(1.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0억 9,100만원(8.7%)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승인	이체	이용	전용				
계	188,990	2,271	4,459	-	-	3,305 △3,305	195,720	176,030	2,599	17,091
국립재활원	61,730	1,682	3,738	-	-	1,876 △1,876	67,150	61,009	821	5,320
국립정신건강센터	46,734	330	430	-	-	1,078 △1,078	47,493	43,299	414	3,780
국립공주병원	18,150	-	22	-	-	44 △44	18,172	16,614	-	1,558
국립나주병원	23,609	49	120	-	-	21 △21	23,778	22,329	39	1,410
국립부곡병원	22,028	-	69	-	-	74 △74	22,097	20,086	363	1,648
국립춘천병원	16,739	211	80	-	-	211 △211	17,029	12,693	962	3,374

나) 이용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전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용 규모는 33억 500만원으로, 주요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국립재활원에서 병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연구용역비, 고용부담금) 등으로 18억 7,600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무직 퇴직연금적립금, 공공요금 등 부족 등으로 10억 7,8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3,305 △3,305	
국립재활원	1,876 △1,876	○ 병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연구용역비, 고용부담금, 공공요금및제세 등) 1,162 ○ 수입대체경비 외부수탁과제 연구비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족(반환금 및 손실금) 715
국립정신건강센터	1,078 △1,078	○ 공무직 퇴직연금적립금, 공공요금 등 부족 816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 부족 262
국립공주병원	44 △44	○ 기본경비(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고용부담금 부족) 42 ○ 교육및실습수입대체경비(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부족) 2
국립나주병원	21 △21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부족 12 ○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 3 ○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 6
국립부곡병원	74 △74	○ 기본경비 부족(공공요금 및 제세) 45 ○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부담금(손익) 부족 29
국립춘천병원	211 △211	○ 외래진료를 위한 정신과전문의 일용직 채용 82 ○ 전공의 퇴직금 지급 고용부담금 부족 18 ○ 재활훈련시설(카페) 단시간근로자 일용임금 부족 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지급분 반납처리 108

라) 초과지출 명세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초과지출¹¹⁾액은 총 44억 5,900만원임.

주요 초과지출 사유를 살펴보면,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연구소 및 병원부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37억 3,800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외부수탁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초과지출하였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초과지출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초 과 사 유	
계	4,459		
국립재활원	3,738	○ 재활연구소 및 병원부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등	3,738
국립정신건강센터	430	○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186
		○ 직업재활교육 한우리카페, 주차장 운영 등	170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74
국립공주병원	22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12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운영	10
국립나주병원	120	○ 전라권역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33
		○ 직장인 마인드 클리닉 운영	30
		○ 국가연구개발 협약과제 연구사업	11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19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27
국립부곡병원	69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24
		○ 외부수탁연구용역	45
국립춘천병원	80	○ 직업재활훈련시설(카페) 운영	66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14

11) “수입대체경비”를 편성·집행하는 중앙관서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그 초과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음.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이월액은 25억 9,900만원임.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승강기 공사 및 연결통로 보수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8억 2,100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3년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4억 1,400만원, 국립춘천병원에서 외래진료실 리모델링공사 및 정신재활시설 증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로 9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이 월 사 유	
계	2,599		
국립재활원	821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승강기 공사 및 연결통로 보수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548
		○ 침대 등 자산취득 및 소아용 하지재활보조로봇 등 외신 연구장비 구매 계약기간 미도래	184
		○ 건강검진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89
국립정신건강센터	414	○ 2023년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309
		○ 의료장비 및 정보화 물품 등 계약기간 미도래	105
국립나주병원	39	○ 시스템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계약기간 미도래	39
국립부곡병원	363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3차) 건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363
국립춘천병원	962	○ 외래진료실 리모델링공사 및 정신재활시설 증축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962

바)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불용액은 170억 9,100만원임.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재활원의 음압병실 구축 사업 구조검토 및 환자 안전 대책 수립 등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른 공사 계약 미체결 32억 7,700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무직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7,091	
국립재활원	5,320	○ 인건비 집행잔액 614 ○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등 사업운영 집행잔액 283 ○ 연구용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축소 및 낙찰차액 등 1,146 ○ 음압병실 구축 사업 구조검토 및 환자 안전 대책 수립 등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른 공사 계약 미체결 3,277
국립정신건강센터	3,780	○ 인건비 집행잔액(상용, 일용임금 포함) 2,370 ○ 의무직 결원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및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10
국립공주병원	1,558	○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60 ○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798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및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01
국립나주병원	1,410	○ 정원 대비 현원 미달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609 ○ 환자감소로 인한 구호 및 교정비 집행잔액 242 ○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수용비 의도적 절감액 302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및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257
국립부곡병원	1,648	○ 예산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7 ○ 환자감소에 따른 구호 및 교정비 등 집행 잔액 1,312 ○ 기본경비, 연구개발비 정산잔액등 사업운영 집행잔액 124 ○ 공사 낙찰차액 등 자본계정 집행잔액 134
국립춘천병원	3,374	○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585 ○ 공무원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 967 ○ 입원병동 미운영으로 조제투약 및 환자 급식비 집행잔액 779 ○ 자본계정(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3

3. 기금 결산

가. 국민연금기금

1) 개요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¹²⁾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급여지급,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금융자산 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법 §101②
관리 및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자금의 대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102②

12)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내 용	비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총괄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153조 5,270억원) 대비 24.2% 증가한 190조 6,386억원임.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A)	실적(B)	비율(B/A)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81,255,566	88,306,640	108.7
	정부내부수입	10,525	10,525	100.0
	여유자금회수	72,260,919	102,321,425	141.6
합 계		153,527,010	190,638,590	124.2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39,426,242	39,384,104	99.9
	국민연금공단 사육확보 사업	33,379	33,112	99.2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61,673	165,484	102.4
	국민연금 복지사업	53,393	53,393	100.0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91,888	91,888	100.0
	국민연금급여지급	39,085,909	39,040,227	99.9
	기금운영비	562,717	544,608	96.8
	기금관리비	930	797	85.7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61,787	543,811	96.8
	여유자금운용	113,538,051	150,709,878	132.7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90조 6,603억원 중 190조 6,386억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5억원 및 미수납액 212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153,527,010	190,660,334	190,638,590	518	21,226	-
○ 사회보장기여금	56,543,899	58,369,781	58,369,781			-
- 사회보장기여금	56,543,899	58,369,781	58,369,781			-
○ 재산수입	24,617,952	29,855,570	29,844,213	-	11,356	0.0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617,952	29,855,570	29,844,213	-	11,356	0.0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6,594	49,588	49,588	-	-	-
- 잡수입	46,594	49,588	49,588	-	-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7,121	48,685	43,058	518	5,110	10.5
- 융자금회수	47,121	48,685	43,058	518	5,110	10.5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260,919	102,326,185	102,321,425	-	4,760	0.005
- 유가증권매각대	58,248,891	87,845,073	87,845,073	-	-	-
- 정부예금회수	14,012,028	14,481,112	14,476,352	-	4,760	0.0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525	10,525	10,525	-	-	-
- 전입금	10,525	10,525	10,525	-	-	-

*주: 국민연금기금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납입고지액은 가입자의 자격소급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 결산보고서상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채권으로 관리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 명세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대부자 사망(유족 및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의해 5억 1,8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함.
-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서 채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연체금액(미수납)이 발생하였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자 사망, 대부자의 월연금액 변경(감소) 등이 연체로 이어져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수정계획액은 153조 5,270억원이고, 계획액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지출계획현액은 153조 5,448억원임. 여유자금운용 등을 통해 190조 6,386억원(124.2%)을 지출하고, 80억원이 '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01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53,527,010	17,765	2,873,917 △2,873,917	153,544,775	190,638,590	7,953	70,06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62,717	184	11,836 △1,635	562,901	544,608	88	18,206
기금운영비	930	37	30	967	797	37	133

단위사업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61,787	147	△30 11,806 △1,605	561,934	543,811	51	18,073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40,333	17,581	4,900 △4,900	357,914	343,877	7,865	6,172
국민연금공단 사육확보 사업	33,379	1,347	1,229 △281	34,726	33,112	512	1,101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61,673	16,234	3,490 △4,619	177,907	165,484	7,353	5,071
국민연금 복지사업	53,393	-	181	53,393	53,393	-	-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91,888	-	-	91,888	91,888	-	-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39,085,909	-	2,857,181	39,085,909	39,040,227	-	45,682
국민연금급여지급	39,085,909	-	2,857,181	39,085,909	39,040,227	-	45,682
여유자금운용	113,538,051	-	△2,867,382	113,538,051	150,709,878	-	-
여유자금운용	113,538,051	-	△2,867,382	113,538,051	150,709,878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조 8,739억원임.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지급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조 8,571억원을 변경하였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계	2,873,917 △2,873,917	
공적연금	2,873,917 △2,873,917	(기금관리운영비) 국내·외 여비 부족분 확보 30 △30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확보 10,201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직무중심 보수체계 컨설팅 연구비 1,565 확보(±200), 청년인턴 기간 연장에 따른 일용임금 부족분(±761), △1,565

구 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공사비 등 확보(±604)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40) 40 △40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사비 등 확보(+216), 자체사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732) 1,229 △281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신규 기금운용직 교육을 위한 경비 및 임차료 부족분 확보(±20) 20 △20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50), 총사업비 조정 결과 구축비 반영(+1,083) 1,133 △1,133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시험 용역비 부족분 확보(±16),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사비 등 확보(△100),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63) 79 △179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사비, 청풍리조트 관리용역비 확보(△287), 자체사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479) △766
		(국민연금 조사연구) 제10차 노후보장패널 본조사 부족분 마련(+707), 우편발송비 회계 정정을 위한 세목변경(±11) 718 △11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해외사무소 파견인력 체재비 및 귀·부임 운임비 확보(±1,292),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53), 자체사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231) 1,345 △1,576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 자체사옥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확보(△22) △22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상근전문위원실 임차료 부족분(±13) 확보 13 △13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제10차 노후보장패널 본조사 부족분 마련(△707), 가입 관련 안내문 제작 확대에 따른 제작비 확보(±182),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사비 등 확보(△10) 182 △899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청풍리조트 매출 증가에 따른 관리용역비 부족분 확보(+181) 181
		(국민연금 급여지급) 소비자물가상승률,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급여지급 부족분 확보(+2,857,181) 2,857,181
		(여유자금운용)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확보(△10,201), 급여지급 부족분 확보(△2,857,181) △2,867,382

다)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액 규모는 80억원임.

주요 이월 사유로는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에서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예산 72억 8,600만원이 있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7,953													
공적연금	7,953	(기금관리운영비)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2개 회계연도를 걸쳐 과업 수행('23.11~'24.6월)		37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2023회계연도 공단 결산 용역('23.12.1. ~ '24.11.30.)		51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인재개발원 설계용역 일시정지 등에 따른 건설보상비(24백만원), 실시설계비(242백만원), 시설부대비(1백만원) 이월, 흥성사옥 및 어린이집 공사비 잔금(200백만원)		467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계약기간 : '23. 9. 26. ~ '24. 3. 29.		45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예산 이월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 <th>이월액</th> <th>이월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td> <td rowspan="2">5,144백만원</td> <td>계약 3차년도 납품기한 조정(~'24.2.29.)에 따라 잔금 4,892백만원</td> </tr> <tr> <td>제6차 상용SW 직접구매 기한 연장 (~'24.3.31.)에 따른 구입비 등 252백만원</td> </tr> <tr> <td>차세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td> <td>2,142백만원</td> <td>2차 계약기간(~'24.2.10) 미도래로 최종 검수 금액 등 이월</td> </tr> </tbody> </table>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5,144백만원	계약 3차년도 납품기한 조정(~'24.2.29.)에 따라 잔금 4,892백만원	제6차 상용SW 직접구매 기한 연장 (~'24.3.31.)에 따른 구입비 등 252백만원	차세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2,142백만원	2차 계약기간(~'24.2.10) 미도래로 최종 검수 금액 등 이월	7,286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5,144백만원	계약 3차년도 납품기한 조정(~'24.2.29.)에 따라 잔금 4,892백만원										
				제6차 상용SW 직접구매 기한 연장 (~'24.3.31.)에 따른 구입비 등 252백만원										
		차세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2,142백만원	2차 계약기간(~'24.2.10) 미도래로 최종 검수 금액 등 이월										
(노후준비서비스) 일반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이벤트 용역('23.12.~'24.1.)		7												
(국민연금 조사연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캐나다 연금투자기관·노르웨이 국부펀드·일본 후생연금·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의 공시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23.11.~'24.3.) : 20백만원 * 미래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구용역('23.11.~'24.4.) : 40백만원		60												

라)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액 규모는 701억원임.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에서 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수가 예상보다 낮아 456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사업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집행잔액 및 정·현원차 발생으로 12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70,060	
공적연금	70,060	(기금관리운영비) 연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33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 집행잔액(22억), 정·현원차 발생에 따른 급여 잔액(98억) * 편성 : 127억원(A등급) → 집행 : 106억원(B등급) 12,00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정현원차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3,682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88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건설보상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47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불용 245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연구용역) 집행잔액 109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집행잔액 1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정보화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85
		(노후준비서비스) 국내여비 집행잔액, 우편 대량발송으로 제세 절감 등 39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지원인원 감소(584 → 563천명) 1,921
		(국민연금 조사연구) 연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94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채용 지연('23.12)에 따른 인건비, 투자 검토 지연에 따른 자문료 미집행액 일부 등 1,118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 해외수급자 절차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76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집행잔액 126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확대에 따른 제작비 절감 143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모바일 발송 확대 등 예산 절감 568
		(국민연금급여지급) 장애연금 수급자 수(예상 81천명 → 실제 75천명)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예상 210천명 → 실제 193천명) 차이에 따른 불용 45,682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1) 개요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¹³⁾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¹⁴⁾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궤련 841원/20개비, 궤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 기금 운용수익금	법 §22②
운용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법 §25①

13)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4) 궤련 841원/20개비, 궤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2) 총괄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담배부담금 등 자체수입 3조 998억원,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 예수) 1조 2,624억원, 여유자금 회수 1,616억원 등 계획(4조 7,395억원) 대비 4.6% 감소한 총 4조 5,238억원 조달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비율(B/A)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2,958,362	3,099,777	104.8
	정부내부수입	1,538,713	1,262,389	82.0
	여유자금회수	242,380	161,637	66.7
합 계		4,739,455	4,523,804	95.4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3,671,440	3,666,340	99.9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7,224	7,224	100.0
	노인의료보장	196,461	195,660	99.6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19,906	17,999	90.4
	공공보건의료확충	657,592	656,432	99.8
	보건산업육성	27,889	27,889	100.0
	국민건강생활실천	385,630	384,781	99.8
	건강보험제도 운영	1,820,839	1,820,839	10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80	46	57.5
	감염병위기대응	17,440	17,277	99.1
	감염병정책관리	65,737	64,000	97.4
	감염병진단분석	10,941	10,960	100.2
	보건의료연구관리	6,483	9,107	140.5
	의료안전예방관리	370,728	369,762	99.7
	만성질환관리	84,490	84,364	99.9
	기금운영비	97	85	87.6
	정부내부지출	823,110	724,876	88.1
	여유자금운용	244,808	132,502	54.1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4조 7,395억원, 징수결정액은 4조 9,825억원, 수납액은 4조 5,238억원(90.8%)이며, 26억원이 불납결손되었고, 4,561억원(9.2%)이 미수납되었습니다.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4,739,455	4,982,456	4,523,804	2,566	456,086	9.2
○ 재산수입	5,671	26,459	25,636	-	824	3.1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602	26,387	25,564	-	824	3.1
- 관유물대여료	69	72	72	-	-	-
○ 경상이전수입	2,895,946	3,531,970	3,074,142	2,566	455,262	12.9
- 벌금, 물수금 및 과태료	4	72	2	3	66	91.7
- 변상금 및 위약금	64	7	0.4	-	6	85.7
- 가산금	2	4,914	5	191	4,718	96.0
- 기타경상이전수입	2,895,876	3,526,977	3,074,134	2,372	450,471	12.8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42,380	161,637	161,637	-	-	-
- 정부예금회수	242,380	161,637	161,637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38,713	1,262,389	1,262,389	-	-	-
- 전입금(국민건강증진계정)	68,314	-	-	-	-	-
- 전입금(공공보건의료계정)	579,735	562,389	562,389	-	-	-
- 예수금	890,664	700,000	700,000	-	-	-
○ 관유물매각대	56,745	-	-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6,745	-	-	-	-	-

나) 불납결손 및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불납결손은 채권 시효완성에 따른 것으로 25억 6,600만원 규모임.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납결손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계	2,566	
경상이전수입	2,566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	채권 시효완성
- 가산금	191	채권 시효완성
- 기타경상이전수입	2,372	채권 시효완성

- 미수납액 4,560억 8,600만원은 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662억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3,842억원)으로 인해 발생함.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미수납 명세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456,086	
재산수입	824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24	관련 지자체, 기관의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455,262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6	소송 진행 중
- 변상금 및 위약금	6	관련기관 예산부족 등
- 가산금	4,718	소송 진행 중
- 법정부담금	384,223	- 납기일 미도래 인한 2,270억원('23.12월말이 공휴일이므로 익년도 전액 납부, 「국고금관리법」 예외규정 적용) - 소송 진행 중인 부담금 1,572억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66,24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체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4조 7,395억원이고, 계획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출계획현액은 4조 7,442억원이며, 이 중 4조 5,238억원(95.4%)을 지출하고, 23억원(0.04%)이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58억원(2.2%)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부문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4,739,455	4,700	1,210 △1,210	4,744,155	4,523,804	2,254	105,792
취약계층지원	7,224	-	-	7,224	7,224	-	-
사회복지일반	177	-	-	177	131	-	46
아동·보육	19,906	-	-	19,906	17,999	27	1,880
노인	196,461	-	-	196,461	195,660	634	166
보건의료	2,694,848	4,700	1,210 △1,210	2,699,548	2,481,950	1,593	103,699
건강보험	1,820,839	-	-	1,820,839	1,820,839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액은 12억 1,000만원이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국민건강 영양조사 사업에서 이동검진 차량 내 골밀도·폐기능 검사실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일반연구가 아닌 일반용역으로 추진 필요 사유로 4억 1,600만원을 증감액 변경하였고,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에서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교육정보센터 운영비 확보 필요 사유로 2억 3,000만원을 증감액 변경하였음.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 계획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1,210 △1,210	
보건의료	1,210 △1,210	(만성질환예방관리)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교육정보센터 운영비 확보 필요 230 △230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시 의심 검체로부터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긴급 연구용역 추진 필요 50 △50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사업) 인체자원 분양 활성화로 국가 감염병 기초연구 연구역량 증대 및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연계 31 △31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대규모 코호트 54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구축 △54 (의료관련 감염관리) 국가 항생제내성조사체계 (Kor-GLASS)의 국가표준실험실 업무 추진 200 △200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 차량 내 골밀도·폐기능 검사실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일반연구가 아닌 일반용역으로 추진 필요 416 △416 (구강건강관리) 국내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필요, 소관 법인감사 등 법률자문 의뢰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 18 △18 (국가결핵예방) 제78차 UN총회 제2차 결핵 고위급 회의 참석 및 결핵고위험국가(중국) 결핵검진 현황 파악 필요 25 △2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에 필요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필요 40 △40

구 분	기금운용 계획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국민건강영양조사) '23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일·식비 및 숙박비 인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연중 48주, 주4일 조사) 여비 부족 69 △6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에 81 필요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필요
		(구강건강관리) 집행잔액 등 △81

다)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액은 23억원으로 주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2,254	
아동·보육	27	(모자보건사업) 연구용역('23.10~'24.3월) 집행 잔금 이월 27
노인	634	(치매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 316 (노인건강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연 및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 318
보건의료	1,593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5개 과제가 24년까지 연구 계속 수행 251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 1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건)로 인한 이월 30 (국가결핵예방) 정책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및 소아 항결핵제의 해외 배송 일정에 따른 이월 25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 66 (국가예방접종실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백신 계약 잔금 이월 173 (의료관련 감염관리)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잔금 이월 842 (만성질환 예방관리) 용역(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지표 설계연구 및 소아건강영향 연구를 위한 코호트 자원확보)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이월 53 (희귀질환자지원) 용역(희귀질환 전문인력 양성 및 및 질환관리체계 고도화) 계약 기간 미도래 18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용역 계약 기간 미도래(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및 활용 방안 연구) 14

라)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액은 1,057억 9,2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공자기금 예수로 인한 이자절감분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에서 125억 7,400만원, 공공계정 자체수입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에서 173억 4,600만원,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에서 68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05,792	
사회복지일반	46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12 (부담금환급금 지원) 집행잔액 34
아동·보육	1,880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신부 지원 집행잔액 등 1,880
노인	166	(치매관리체계 구축)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 신청 저조 및 집행잔액 등 155 (노인건강관리)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
보건의료	103,700	(혈액안전관리) 연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 및 집행잔액 등 163 (국가암관리) 지역 암역학조사 현안 미발생,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공모 참여 기관 저조 및 집행잔액 415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계약차액 및 집행잔액 4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96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잔액 등 1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19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93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용역 낙찰차액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자체보조사업 교부잔액 등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등으로 인건비 미집행액, 연구용역 집행잔액 등 234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운영비 등 집행잔액 63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37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국가결핵예방)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미교부액 등	1,713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개인보호구 구매 낙찰차액 및 연구용역사업 등 집행 잔액	409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해외의약품 환율변동 차액 및 집행잔액 등	136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
		(국가예방접종실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계약 낙찰 차액, 기타 집행잔액	631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93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공무직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실험장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0
		(만성질환 예방관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4
		(희귀질환자지원) 연구용역 낙찰 차액	6
		(국민건강영양조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9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75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용역과제 낙찰차액, 시험연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1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시험연구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10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일반연구비 집행잔액	121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이월 학술연구용역과제 집행잔액	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3년 12월(연말) 공자기금 예수로 인한 이자절감	12,574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공공계정 자체수입 발생	17,34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중앙감염병병원 총사업비 제외 결정('22.12) 및 민간부지 소유자 협의 결과 등에 따른 관련 예산 미집행	697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집행잔액	68,314

주: 1)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공공보건의료계정의 사업비 지출을 위한 전출금

(국민건강증진계정 → 공공보건의료계정)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계정과 공공보건의료계정(국립중앙의료원 운영 및 현대사화사업 지원을 위한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함. 이때 공공보건의료계정의 주 수입원인 국립중앙의료원 토지매각대는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수납 또는 미수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

계정에서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의 전출금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계정의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국립중앙의료원 토지 매각 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비의 상환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정에서 국민건강증진계정으로의 전출금 필요

다. 응급의료기금

1) 개요

-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 제19조¹⁵⁾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정부출연금(도로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과징금(요양기관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자금 지원, 응급장비 구비 지원, 응급의료 교육·홍보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35% ·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정부의 출연금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법 §20①
운용	·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법 §21

15)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총괄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5,730억원) 대비 19.7% 증가한 6,858억원임.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비율(B/A)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316,363	331,134	104.7
	정부내부수입	239,570	239,570	100.0
	여유자금회수	17,065	115,123	674.6
합 계		572,998	685,827	119.7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248,941	249,925	100.4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20,063	21,581	107.6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25,275	25,181	99.6
	응급의료기관 지원	134,924	134,626	99.8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13,380	13,368	99.9
	119구급 운영지원	48,319	48,447	100.3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1,624	1,621	99.8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5,356	5,101	95.2
	기금운영비	232	203	87.5
	정부내부지출	320,040	320,039	100.0
	여유자금운용	3,785	115,660	3055.7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5,730억원, 징수결정액은 6,998억원이며, 이 중 6,858억원(98.0%)이 수납되었고, 139억원(2.0%)이 미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572,998	699,764	685,827	-	13,938	2.0
재산수입	9,569	19,481	18,859	-	622	3.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569	19,481	18,859	-	622	3.2
경상이전수입	8,444	30,117	16,801	-	13,315	44.2
- 변상금및위약금	-	18	18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444	30,045	16,766	-	13,279	44.2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53	17	-	37	69.8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8,350	295,474	295,474	-	-	-
- 용자원금회수	298,350	295,474	295,474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065	115,123	115,123	-	-	-
- 정부예금회수	17,065	115,123	115,123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9,570	239,570	239,570	-	-	-
- 전입금	239,570	239,570	239,570	-	-	-
- 예수금	-	-	-	-	-	-

나) 미수납 명세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액 규모는 총 139억 3,800만원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13,938	
재산수입	622	
- 기타이지수입및재산수입	622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반납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13,315	
- 기타경상이전수입	13,279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부족 등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5,73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원을 더한 5,756억원이며, 이 중 6,858억원(119.7%)을 지출하고, 4억원(0.1%)이 202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원(0.2%)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572,998	2,623	11,812 △11,812	575,621	685,827	395	1,274
보건의료	572,998	2,623	11,812 △11,812	575,621	685,827	395	1,274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118억 1,200만원임.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재원 마련의 사유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하였는데, 증액 사업으로는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19구급대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119구조장비 확충’이 있고, 이를 위한 감액사업으로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이 있음.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11,812 △11,812	
보건의료	11,812 △11,812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국가격리시설 소방안전 관리용역비 등 증가로 인한 관리용역비 소요예산 부족 1 △1
		(119구조장비 확충) 국외교육여비 추가확보 필요 109 △109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소요예산 부족(국가격리시설 내 공조기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발생) 14 △14
		(119구조장비 확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소방헬기 결함 발생으로 추가 부품구매 및 외주정비 비용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 2,200 △2,200

구 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손상 통계집 발간, 국가손상 조사감시사업 평가 및 자문 수행, 결과보고회 개최 준비 등을 위해 시험연구비를 일반수용비로 세목변경하고자 함,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관련 현장 점검 실시 및 국내 회의, 심포지엄 등 행사 대면 개최 증가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국내여비로 비목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함 14 △14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600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161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980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2,330
		(119구급대지원)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819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2,18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응급실 미수용 사건 지속 발생에 따른 당정협의 긴급대책의 연내 조속한 실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부족분의 추가 소요 자원 등을 마련위해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5,110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국가격리시설 내 냉난비기 실외기 및 소화전 계전기 고장으로 긴급 수리 필요 5 △5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련 법령 해석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 집행을 위한 예산 부족분 마련 5 △5

구 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엔진 결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자원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784
		(119구조장비 확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엔진 결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자원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3,140 △251
		(신증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엔진 결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자원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1,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엔진 결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자원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1,105
		(119구조장비 확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엔진 결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자원 마련을 위한 세목조정 206 △206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2023년도 제3차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 개최 계획(12.28.)에 따라 임차료 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자원 활용 2 △2

다) 이월 명세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이월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서 충청강원2호(AS365N2) 기체의 600시간 및 2년 외주검사 시기가 '23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항공기 정비수행 부품수급 지연 및 외산물품 납품 지연에 따라 사고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395		
보건의료	39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계약 완료 기간 미도래	18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연구용역비 이월(모자의료 전달체계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보상 마련 연구)	57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15
		(119구조장비 확충) 충청강원2호(AS365N2) 기체 600시간 및 2년 외주검사 시기 도래일이 '23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 발생, 항공기 정비수행 부품수급 지연 및 외산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305

라) 불용 명세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액은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 사유로 12억 7,4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274		
보건의료	1,274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5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집행잔액	16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타 조사사업과 결과보고회 공동 개최에 따른 행사 준비 비용 감소	10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집행잔액	82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통신회선료집행잔액 (4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용역관련 낙찰차액(9백만원)	13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집행 잔액	7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의료기관 보조금 산정 후 잔액	6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외과계 전문의 인력 부족, 연구용역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발생	136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2022년에 지정된 고위험산모신생아통	346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합센터 1개소의 시설장비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미교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병상 조정으로 인한 일부 금액 불용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집행잔액 2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20
		(119구급대 지원) Pre-KTAS 교육 집행잔액 및 사이버교육 제작 용역 등 계약 낙찰 차액 147
		(119구조장비 확충) “항공기 엔진구매” 낙찰차액 및 추가 결함발생 대비 잔여금액, 항공장비 외자구매 환차익 및 교육비(여비) 집행잔액 등 129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집행잔액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집행잔액 2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변경(확진자 재택 격리, 방역교통 수단 이용 귀가 허용 등)으로 인해 국가격리시설 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253
		(인건비) 집행잔액 26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집행잔액 1

4.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현황

가. 개요

- 현행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 외로 운용됨에 따라 다른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국가의 재정 활동의 일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¹⁶⁾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¹⁷⁾ 등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재정의 일부(20%)가 일반회계(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6%)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8개 사회보험 운용 방식 비교 >

소관부처	구분	도입연도	국가재정	회계·기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1977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1960	○	공무원연금기금
국방부	군인연금	1963	○	군인연금기금
교육부	사학연금	1975	○	사학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1988	○	국민연금기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	○	산재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995	○	고용보험기금

16)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1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나. 수입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예산은 107조 4,945억 원, 결산은 111조3,63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3조 8,687억 원(3.6%) 증가하였음.

건강보험 예산은 92조 6,782억원, 결산은 95조 7,475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3조 693억원(3.3%)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4조 4,739억원, 결산은 15조 2,733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7,994억원(5.5%) 증가하였음.

건강보험 수납액 증가의 주된 이유는 보험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수입 및 사업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⁸⁾.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 결산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 (A)	결산 (B)	예산 대비 (B-A)	수납률 (B/A)
합 계		1,074,945	1,113,632	38,687	103.6
건강보험	소계	926,782	957,475	30,693	103.3
	일반회계	922,593	954,219	31,626	103.4
	특별회계	4,189	3,256	△933	77.7
장기요양	소계	144,739	152,733	7,994	105.5
	일반회계	144,657	152,660	8,003	105.5
	특별회계	82	73	△9	89.0
사회보험통합징수		3,424	3,424	-	100.0

18)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수입은 예산 대비 3조 306억원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금 및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수입은 각각 예산 대비 333억원, 2억원 감소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입 및 사업외수입, 이월잉여금이 각각 예산 대비 2,927억원, 1,528억원, 3,889억원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금 등이 350억원 감소하였음.

다. 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107조 4,94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98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7조 5,927억원이며, 이 중 106조 273억원이 집행되었고, 649억원은 이월되었으며, 1조 5,005억원은 불용되었음.

건강보험은 예산현액 92조 7,747억원 중 91조 9,130억원이 집행되었고, 637억원이 이월, 7,980억원이 불용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예산현액 14조 4,756억원 중 13조 7,865억원이 집행되었고, 12억원이 이월, 6,879억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 결산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집행률 (D/C)
합 계		1,074,945	982	1,075,927	1,060,273	649	15,005	98.5
건강보험	소계	926,782	965	927,747	919,130	637	7,980	99.1
	일반회계	922,593	921	923,514	915,437	620	7,457	99.1
	특별회계	4,189	44	4,233	3,693	17	523	87.2
장기요양	소계	144,739	17	144,756	137,865	12	6,879	95.2
	일반회계	144,657	17	144,674	137,789	12	6,873	95.2
	특별회계	82	-	82	76	-	6	92.7
사회보험통합징수		3,424	-	3,424	3,278	-	146	95.7

5.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업 현황

가. 개요

□ 기금의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의 3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복권기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서도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에는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함.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타 부처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심사할 수 없으나, 「국회법」 제84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예산) 또는 결산 예비심사 의결일 전일까지 해당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타 부처 기금사업 중 보건복지부 수행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는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개 타 부처 소관 기금으로 7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3회계연도 타 부처 소관 기금 6개 사업의 계획액은 1,352억 1,900만원이며, 1,399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타 부처 기금사업 중 보건복지부 수행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금명	소관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합 계 (총 7개 사업)			135,219	139,924	138,275
복권기금	기재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6352-334)	2,371	2,371	2,01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365-347)	5,300	5,191	4,770
		입양아동 가족지원 (6364-346)	22,469	22,469	20,222
		재난적 의료비 지원 (6362-344)	56,754	61,568	68,4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541-312)	47,205	47,205	41,697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융자지원 (4500-4531)	560	560	560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4731-300)	560	560	560

다. 보건복지부 기금사업 중 타 부처 수행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사업 중에서 질병관리청 외의 타 부처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응급의료기금의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임.

해당 사업은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495억 2,100만원이고, 496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복지부 기금사업 중 타 부처 수행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행부처	세부사업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합계 (총 3개 사업)			49,521	49,636	34,799
응급의료기금	해양경찰청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1,202	1,189	1,750
	소방청	119구급대 지원	34,283	34,136	21,848
	소방청	119구조장비 확충	14,036	14,311	11,201

6. 의무지출사업 현황

가. 개요

□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정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는 그 범위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로 구체화하고 있음.

의무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인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국가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정부가 지난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638.7조원이고, 이 중 의무지출은 340.3조원으로 5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의무지출의 비중은 2022회계연도에 48.5%였으나 2023회계연도부터 50%를 초과하게 되었음. 이러한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로 2023회계연도 기준 154.7조원(45.5%)으로 나타남.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23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441.1	438.7	456.9	474.1	489.0	2.6
(비중)	(69.0)	(66.8)	(66.8)	(66.7)	(66.4)	
○ 기금지출	197.7	218.2	227.5	237.0	247.9	5.8
(비중)	(31.0)	(33.2)	(33.2)	(33.3)	(33.6)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5.0
(비중)	(53.3)	(53.0)	(54.5)	(55.4)	(56.1)	
○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2.0
(비중)	(46.7)	(47.0)	(45.5)	(44.6)	(43.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 복지분야 법정지출	154.7	172.7	180.7	190.6	199.6	6.6
▪ 지방이전재원	155.4	139.8	154.7	163.0	171.4	2.5
▪ 이자지출	22.9	27.4	29.6	32.3	34.8	11.0
▪ 기타 의무지출	7.3	8.3	8.3	8.1	7.8	1.5

* 국회 확정예산 기준

나.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사업 현황

-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사업은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연금지급 등 예산사업 21개와 국민연금급여지급 등 기금사업 3개를 합하여 총 2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5개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사업 신설(2018년) 등에 따라 집계 대상 사업의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은 25개 사업 61조 8,912억원, 2020년은 25개 사업 70조 5,765억원, 2021년은 23개 사업 76조 7,657억원, 2022년은 23개 사업 82조 1,152억원, 2023년은 24개 사업 94조 878억원

2019년 대비 2023년 의무지출 예산이 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개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19년 추경 (25개)	'20년 추경 (25개)	'21년 추경 (23개)	'22년 추경 (23개)	'23년 본예산 (24개)
합계		61,891,199	70,576,547	76,765,686	85,678,991	94,087,766
<예산소계>		36,970,731	42,091,053	45,542,024	49,691,662	56,038,119
일반회계	생계급여	3,761,705	4,337,925	4,655,454	5,264,772	6,014,148
	해산장제급여	33,811	31,504	33,308	34,841	38,210
	의료급여	6,437,402	7,003,762	7,680,461	8,123,234	9,098,368
	장애수당(기초)	75,490	76,589	80,021	81,633	142,943
	장애인연금	719,735	786,181	829,084	832,631	878,663
	장애인활동지원	1,014,902	1,305,672	1,521,719	1,742,549	1,991,879
	의사상자지원	3,356	1,981	2,816	2,816	2,534

회계	세부사업	'19년 추경 (25개)	'20년 추경 (25개)	'21년 추경 (23개)	'22년 추경 (23개)	'23년 본예산 (24개)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16,221	3,395,239	3,178,111	3,025,145
	기초연금지급	11,495,198	13,176,531	14,963,468	16,289,504	18,530,43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418,462	1,710,700	2,035,442	2,244,640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11,092	13,191	13,287	12,305	16,82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5,972,077	7,348,164	7,655,350	8,684,293	9,149,408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839,765	888,312	913,105	1,027,161	1,023,917
	아동수당 지급	2,162,729	2,283,374	2,219,455	2,379,318	2,256,398
	부모급여(영아수당)	-	-	-	-	1,621,454
책특회계	책특 6개기관 건강보험부담금(손익)	3,058	3,204	2,892	3,052	3,154
<기금소계>		24,920,468	28,485,494	31,089,327	35,987,329	38,049,647
건강증진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01,082	1,880,092	1,916,650	1,814,940	1,820,839
	부담금환급금 지원	86	3,491	86	86	80
국민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23,019,300	26,601,911	29,172,591	34,172,303	36,228,728

* 각 해당연도의 의무지출 기준으로 작성함

*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운영비 등) 포함 여부에 따라 산출금액 일부 차이 발생

다. 2023년도 의무지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24개 의무지출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94조 878억원이고, 예산현액은 97조 329억원이며, 이 중 95조 9,314억원이 집행되었고, 1조 1,015억원이 불용되었음.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에서 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7,000억원이 불용되었고,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지자체 집행소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306억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의무지출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계	94,087,766	94,087,766	97,032,934	95,931,399	35	1,101,500
□ 예산	56,038,119	56,038,119	56,126,106	55,070,287	35	1,055,784
생계급여	6,014,148	6,014,148	6,015,198	6,015,166	0	32
해산장제급여	38,210	38,210	38,210	38,210	0	0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9,062,321	8,362,283	0	700,038
장애수당(기초)	142,943	142,943	142,943	142,943	0	0
장애인연금	878,663	878,663	877,439	877,418	0	21
장애인활동지원	1,991,879	1,991,879	1,991,828	1,991,809	0	19
의사상자지원	2,534	2,534	2,534	2,155	0	379
영유아보육료 지원	3,025,145	3,025,145	3,163,445	3,163,445	0	0
기초연금지급	18,530,432	18,530,432	18,520,646	18,190,029	35	330,58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44,640	2,244,640	2,244,640	2,237,327	0	7,313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16,826	16,826	16,826	16,826	0	0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9,149,408	9,149,408	9,149,408	9,149,408	0	0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23,917	1,023,917	1,014,794	997,475	0	17,319

세부사업명	2023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동수당 지급	2,256,398	2,256,398	2,265,035	2,265,035	0	0
부모급여(영아수당)	1,621,454	1,621,454	1,617,554	1,617,539	0	15
국립재활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798	798	894	894	0	0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부담금(손익)	838	838	838	816	0	22
국립니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60	460	466	466	0	0
국립부곡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09	409	438	438	0	0
국립춘천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309	309	309	268	0	41
국립공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340	340	340	337	0	3
□ 기금	38,049,647	38,049,647	40,906,828	40,861,112	-	45,716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820,839	1,820,839	1,820,839	1,820,839	0	0
부담금환급금 지원	80	80	80	46	0	34
국민연금급여지급	36,228,728	36,228,728	39,085,909	39,040,227	0	45,682

7.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제2항¹⁹⁾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시정 1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81건으로 총 9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말 기준 75건을 조치완료하고, 2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조치율 78.9%).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구분	계	시정요구 수준별 현황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95건	-	-	1건	14건	81건	(1)
결산	92건	-	-	1건	13건	79건	(1)
예비비	3건	-	-	-	1건	2건	-

*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

구분	계	조치상황 현황 (2024. 4월말 기준)	
		조치완료	조치중
합계	95건	75건	20건
결산	92건	73건	19건
예비비	3건	2건	1건

19)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4.30.)
□ 결산		
(1)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공공기관 시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출 연구용역의 동일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례적 수의계약 시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증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 생계급여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정확한 추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장애아동 관련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기대효과 달성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 연례적인 건강보험부담금 소요액 과소 계상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 동일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례적인 수의계약 시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1) 장애인법률구조 사업 성과지표 목표 상향 및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6)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임금 수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7) 노인요양시설 확충 대책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8) 치매관리체계의 질적 변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9) 성과지표 개선 및 관리인력의 높은 이직률 대책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상향 검토 및 부당청구 대책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21)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유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2)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금액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3)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유예기간 연장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높은 중도포기율 문제	주의	조치완료
(24) 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 과다 개선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5)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지연에 따른 펀드 출자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6)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데이터 제공 절차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7)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모바일 전달체계 종합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8) 정보화 사업 계약기간의 연도내 종료 노력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4.30.)
(2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부진 문제 해소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0) 뇌전증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1) 광주, 울산의료원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병상 수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3)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34)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지원의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35) 금연상담전화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 상향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6)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7) 마약류 중독자 치료 유도 및 치료보호기관별 편중 해소	제도개선	조치완료
(38)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0)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제도개선	조치완료
(41) 책임운영기관의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2)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감액 소요를 반영하지 않은 세입예산 편성 주의	주의	조치완료
(43) 타 기관 소관 세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오류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44) 국민건강증진 기금 재정 관리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6)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에 따른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차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7) 국외공무원수를 포상금으로 추진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완료
(48) 자활급여 추계방식 검토 및 자활근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9)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을 재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세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조치완료
(50) 예탁금 계좌 내 수입 대비 지출의 적정성에 근거한 예산소요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관련 조치 필요	시정	조치중
(5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남은 과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3)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 적극 추진 필요	주의·제도개선	조치완료
(54)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연례적 실행 부진 해소	제도개선	조치완료
(55) 국립병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포상금 지원에 대한 타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범정부적 제도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6) 세목조정을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기관운영 경비를 편법 지원하는 사례 시정 필요	주의	조치완료
(57)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교부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4.30.)
(5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 성과지표 조정 및 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9) 생산시설 매출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0) 장애수당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집행관리 철저	제도개선	조치완료
(61) 가산급여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2)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유인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4) 다함께 돌봄 사업의 실적 부진 문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방식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6)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7)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 실집행을 제고 및 미인출금액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수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8)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용역 추진 지양 필요	주의	조치완료
(69) 의료기술시험 연수원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제도개선	조치완료
(70)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1)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내역사업의 별도 사업 분리 또는 타 세부사업 이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무리한 추진에 대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3) R&D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에서 과제 관리 철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4) R&D 과제 참여제한 이후 타 R&D 과제 계속 수행 등 사후관리 미흡 문제	주의	조치완료
(75) 향후 팬데믹 신속 대응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및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6) 입주기관 자체수입금을 통한 시설 증축 시 「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 필요	주의	조치완료
(77) 중증어린이 단기 입원병동 확충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 중증소아환자 대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8)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실적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9) 수입대체경비 초과수납분 한도를 초과한 초과지출 승인 주의	주의	조치완료
(80) 대체투자 등 운용비용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1) 노후준비서비스 일반수용비 및 강의수당 지출 부적정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82) 예산편성시 출연에서 보조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철저 필요	주의	조치완료
(83)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제도개선	조치완료
(85)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의 지원 목표 현실화 및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86) 권역외상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조속한 지정 완료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7)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4.30.)
(88)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효성 확보 및 환류체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다양성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0) 건강보험공단 총인건비 연례적 과소계상 및 초과계리 주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1) 제재처분을 받은 R&D 과제의 환수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2) 엘리엇 소송에 따른 책임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 예비비 지출		
(1) 의무지출예산의 이용 감액 후 예비비로 충당하는 재정운용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2) 아동수당 급여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및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손실보상 개산금 정산 철저 및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 굵은 글씨는 조치 중인 사항

II. 총괄 검토

1. 의료 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

법정계획을 장기간 미수립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특히 보건 의료발전계획 및 그와 연계된 의료인력에 관한 법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다수 법률에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현재 7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시정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 계획 미수립 현황 >

법정 계획	미수립 사유(복지부 제출)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00년 시행)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관련 대책('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23년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왔음.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
전공의종합계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 '16년 시행)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19년 시행)	
의료인 수급계획 (의료법 제60조의2, '15년 시행)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2년 시행)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 빈곤아동 대상 지원과제를 포함하여 수립, 빈곤아동 대상의 단독 계획 수립보다 관련 아동정책 전반의 틀 안에서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5~29): 빈곤아동

법정 계획	미수립 사유(복지부 제출)
	포함 계획 수립 예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17년 시행)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강화 및 장애친화 인프라 구축 등 사업기반 마련하고 있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23.3.) 시 장애인건강보건 내용을 포함함. * 장애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발표 예정('24.12월)
효행장려기본계획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08년 시행)	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과제 4-2-2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하여 수립하였음. ※ 보건복지부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의 모색”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4-2-2의 내용은 동법상 효행의 정의(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이에 연계된²⁰⁾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의료인 수급계획 등 의료인력 관련 법정 계획들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함.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0년 법 제정 이후 24년간 수립되지 않았고,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9.4 의정합의)

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2호에 따르면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 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라고 합의하였음.

- 한편, 법정계획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과다하고 계획간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²¹⁾도 있는바, 법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이채정 외 3인,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0.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누적에 따라 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 증가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²²⁾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²³⁾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수입 구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23년 기준 2조 9,737억원으로 전체 수입(4조 5,238억원)의 약 66%,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차입을 의미함) 등 정부내부수입이 1조 2,62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28%로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주 수입원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자체수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1.7%, 연평균 0.6% 상승했고,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7%²⁴⁾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 기준으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음.

22)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3)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쉐련 841원/20개비, 쉐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24)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6% 상승

< 국민건강증진기금 최근 4년간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자체 수입	3,045,893	3,071,450	2,953,924	3,099,777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967,130	2,962,962	2,824,994	2,973,665
○ 기타	78,763	108,488	128,929	126,112
☐ 정부내부수입	780,898	904,759	943,044	1,262,389
☐ 여유자금회수	289,987	324,506	353,419	161,637
합계	4,116,778	4,300,715	4,250,388	4,523,803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예수금)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3회계연도에는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7,000억원으로, 누적 예수금은 4조 5,329억원임.

- 누적된 예수금으로 인해 2023회계연도에는 885억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의 예수금 및 이자비용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수금	748,300	845,922	700,000	700,000
(누적예수금)	3,079,964	3,545,886	3,906,886	4,532,886
이자총액	99,121	158,514	239,517	270,214
이자상환액	51,454	55,617	59,604	88,487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부터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인 예수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출 구조조정 방안) 당초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 목적²⁵⁾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산업 R&D(첨단의료기술개발,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한국형 수술질향상 프로젝트(K-NSQIP)) 등 당초 입법 취지 및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도 규정하고 있어²⁶⁾, 보건

25) 법률 제491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유: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운동부족·흡연·음주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생략)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생략)

26)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산업 관련 R&D의 추진은 법률에 따른 것이나, 기금 자체수입이 지출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증진기금 세부사업별(소관 국/관 구분) 2023년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소관	당초계획	수정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	재활병원건립	장애인정책국	4,000	4,000	4,000	0	0
2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정책국	684	684	684	0	0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인정책국	2,540	2,540	2,540	0	0
4	기금관리비	정책기획관	97	97	85	0	12
5	부담금환급금 지원	정책기획관	80	80	46	0	34
6	모자보건사업	인구이동정책관	13,396	13,396	11,489	27	1,880
7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인구이동정책관	6,510	6,510	6,510	0	0
8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정책관	189,753	189,753	189,282	316	155
9	노인건강관리	노인정책관	6,708	6,708	6,378	318	12
10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공공보건정책관	3,844	3,844	3,844	0	0
11	혈액안전관리	공공보건정책관	7,632	7,632	7,488	0	163
1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강정책국	5,763	5,763	5,763	0	0
13	국가암관리	공공보건정책관	60,618	60,618	60,203	0	415
14	첨단의료기술개발(R&D)	첨단의료지원관	19,189	19,189	19,189	0	0
15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R&D)	첨단의료지원관	3,700	3,700	3,700	0	0
16	한국형 수술질향상 프로젝트 (K-NSQIP)(R&D)	보건산업정책국	5,000	5,000	5,000	0	0
17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 사업관리	건강정책국	1,053	1,053	757	251	45
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정책국	72,385	72,385	72,307	0	96
19	구강건강관리	건강정책국	899	818	805	0	13
20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건강정책국	9,586	9,586	9,468	121	19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건강정책국	113,922	113,922	113,821	30	93
22	음주폐해예방관리	건강정책국	1,255	1,255	1,255	0	0
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건강정책국	19,032	19,032	19,032	0	0
24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 기관 평가	정신건강정책관	1,538	1,538	1,535	0	3
25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정책관	117,113	117,113	117,107	0	12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연번	세부사업	소관	당초계획	수정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정책관	48,847	48,928	48,694	0	234
27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질병청	880	880	841	0	63
28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질병청	15,925	15,925	15,909	0	37
29	국가결핵예방	질병청	48,932	48,932	47,250	25	1,713
30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질병청	5,467	5,467	5,056	66	409
31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질병청	11,973	11,973	12,220	0	136
32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질병청	7,056	7,056	7,043	0	33
33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질병청	3,885	3,885	3,918	0	34
34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청	357,566	357,566	356,861	173	631
35	의료관련 감염관리	질병청	11,252	11,252	11,034	842	93
36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질병청	1,910	1,910	1,866	0	140
37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병청	33,189	33,189	33,124	53	74
38	희귀질환자지원	질병청	43,040	43,040	43,016	18	6
39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청	5,749	5,749	5,786	14	69
40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질병청	2,512	2,512	2,437	0	75
41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질병청	4,955	4,955	4,978	0	11
42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질병청	1,528	1,528	1,517	0	11
43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질병청	0	0	532	0	10
44	형질분석연구(R&D)	질병청	0	0	23	0	0
45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질병청	0	0	1,511	0	121
46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R&D)	질병청	0	0	546	0	8
47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정책국	1,820,839	1,820,839	1,820,839	0	0
48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공공보건정책관	45,805	45,805	45,805	0	0
4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공보건정책관	533,930	533,930	533,330	0	697

자료: 보건복지부, 총지출 기준

□ 보건복지부는 정책환경변화를 고려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우선 순위 조정, 집행 부진사업 감액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수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3. 소관 공공 모바일 앱 검토

가. 공공 모바일 앱 성과평가 제도의 개요

- 「전자정부법」 제16조²⁷⁾에 따르면 행정기관등(공공기관 포함)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며,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할 책무가 있음.
- 이러한 책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공공 모바일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성과가 저조한 앱은 폐기 또는 보완 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²⁸⁾

27)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2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시행 2023. 5. 8.] [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제4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성과관리

제22조(성과측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

<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

구분	항목(배점)	설명								
배포/ 보급	누적 다운로드수(20)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생략)								
	전년대비 설치율 (25)	【정의】 전년 동기간 대비 다운로드 건수의 비율 (생략)								
	투입예산대비 활용도 (10)	【정의】 총 투입예산 백만원당 누적 다운로드 건수 (생략)								
관리	업데이트 최신성 (10)	【정의】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측정 (생략)								
	앱 만족도(10)	【정의】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한 평가점수 (생략)								
	이용자 관리(10)	【정의】 최근 1년간 작성된 앱 이용자 리뷰에 대한 앱 관리자의 답변율 (생략)								
접근성	하위 OS버전 지원여 부(6)	【정의】 최소수준의 OS버전 지원 여부(최소 수준은 매년 평가 전 결정) (생략)								
	복수앱스토어 게시여 부(9)	【정의】 복수 앱스토어 게시를 통한 다양한 접근채널 제공여부 평가(생략)								
평가 기준	총점(100)	<table><tr><td>구분</td><td>60점 미만</td><td>60점 이상~70점 미만</td><td>70점 이상</td></tr><tr><td>점수</td><td>폐기</td><td>개선</td><td>유지</td></tr></table>	구분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	점수	폐기	개선	유지
구분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							
점수	폐기	개선	유지							

자료: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5]

□ 성과측정의 대상은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모바일 앱이며, 성과측정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음.²⁹⁾

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 ③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모바일 앱의 성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앱의 정비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소관 앱의 정비 또는 폐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권고한 앱의 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시행 2023. 5. 8.] [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25조(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 결과를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내 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공공 모바일 앱 기기 접근성 제약 및 사용자 평가 저하 등 품질 개선 노력 필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앱 중 특정 모바일 기기 기종에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사용자 평가가 과도하게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공공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운영체제 서비스 미제공 시정 필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이지킴콜’ 앱은 iOS에서만,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은 Android 운영체제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바³⁰⁾,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차별받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 등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은 iOS 운영체제 앱이 존재하나,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아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없고 특정 웹 주소³¹⁾ 접속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후 설치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 참고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앱 성과지표에는 하위 OS버전 지원여부 및 복수앱스토어 게시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앱마켓 평점 저조 앱 만족도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장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3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앱을 Android 운영체제에서만 서비스하는 이유는 Android는 NFC 통신을 지원하는데 비해 IOS는 애플 본사에서 해당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기인함.

3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ownload/contents/np/m/s/smart_qrcode.html

요양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및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채움건강 앱은 앱마켓에서 5점 만점에 3점 미만의 평점을 받은바, 사용성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앱마켓 평점 3점 미만의 공공앱 현황 >

기관	공공앱	애플 앱스토어 점수(iOS)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수(Android)
보건복지부	복지로	1.2	2.5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1.5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장기요양	(앱스토어 미등록)	2.9
	모바일 건강보험증	1.5	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2.2	3.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채움건강	2.6	2.2

자료: 직접 조사(2024년 7월 3일 기준)

□ (공공앱 폐기 현황 검토)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 소관 평가대상 공공앱 7개 중 “폐기” 등급으로 평가받은 앱은 코로나19 진료지원 시스템 1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에 평가대상 10개 모바일 앱 중 3개(30%) 및 2021년에 평가대상 14개 모바일 앱 중 4개(28.6%)가 “폐기” 등급으로 평가된 것에 비해 개선된 것임.

< 전체 모바일 앱 중 폐기 비율(정비계획 기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

(단위: %)

연도	중앙부처		공공기관	
	평균	보건복지부	평균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5.1	14.3	15.9	0.0
2022년	10.3	30.0	13.3	6.7
2021년	8.8	28.6	9.0	18.8
2020년	8.0	0.0	10.2	6.3
2019년	9.9	0.0	16.3	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및 그 소관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공앱 중 최근 5년간 성과평가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폐기”로 평가된 앱은 총 12개(폐기 완료된 앱은 10개)로서, 이러한 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누적 20억 1,700만원임.

< 정비계획에 의하여 폐기가 결정된 공공앱 및 예산액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앱 이름	투입 예산	개발	폐기
합계	5개 기관	12개(10개 최종 폐기)	2,017	-	
2020년 평가 및 정비계획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1급 응급구조사 SBT 튜토리얼	20	2017	2021
2021년 평가 및 정비계획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인드 모어	27	2018	2021
		스마트 터치미	41	2018	2021
		정신건강 자가검진	83	2018	202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망 사업자 부담)	2013	미정→ 유지 ¹⁾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1급 응급구조사 SBT 튜토리얼	20 (※중복항목)	2017	2021
		SBT 튜토리얼	20	2016	20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의료지원 게이트웨이	42	2017	2021
2022년 평가 및 정비계획	보건복지부(국립정신 건강센터)	마성의 토닥토닥	127	2018	202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_모바일앱	58	2015	미정 ²⁾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포함)	2020	2021
	아동권리보장원	자립 온 앱	109	2020	2022
2023년 평가 및 정비계획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1,490	2021	2023

주: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은 2021년 평가 및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후 재검토를 통해 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가 수정되었음.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_모바일앱은 2022년말까지 폐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되면서 앱의 서비스 종료도 지연되고 있음.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취합

< 참고: 2023년 공공앱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소관) >

연번	기관명	공공앱명	서비스 시작년도	2023년도 다운로드	업데이트 최신일자	성과측정 최종결과
1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부	2014	3,482	2023-07-20	유지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15	12,115	2023-08-18	유지
3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2011	782,145	2023-01-10	유지
4		치매체크	2013	36,583	2023-07-27	유지
5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2021	44,975	2022-04-15	폐기
6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2020	2,140	2021-06-18	개선
7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마음프로그램	2020	8,650	2020-12-21	유지
8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나의건강기록 앱	2021	96,913	2022-03-10	유지
9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건강e음	2015	322,553	2022-08-12	유지
10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2018	16,399	2023-07-03	유지
1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제공	2010	307,160	2023-08-02	유지
12	국민건강보험 공단	The건강보험	2020	6,058,836	2023-06-21	유지
13		스마트 장기요양	2017	326,305	2023-05-09	유지
14		장기요양웹진	2016	21,470	2023-04-14	유지
15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간편계산기	2013	10,759	2014-12-01	유지
16		내 곁에 국민연금	2018	2,002,599	2023-03-29	유지
17	대한적십자사	레드커넥트 - 300만 헌혈자를 위한 공식 헌혈 앱	2019	658,288	2023-04-24	유지
18	이동권리보장원	아이지킴콜	2014	3,895	2017-04-24	유지
19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금연길라잡이	2011	21,337	2020-12-28	유지
20		미래건강	2021	1,844	2023-05-16	유지
21		오늘건강 - 어르신 건강관리 앱	2020	53,086	2023-07-25	유지
22		채움건강	2016	59,185	2023-05-09	유지
23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자원봉사 VMS	2021	44,689	2021-06-18	유지

자료: 행정안전부

다. 개인 의료기록에 관한 다수 공공 앱에 대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및 통합적 서비스 필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앱에서 각각 개인 의료기록 조회 기능을 중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상호 연계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유관 기관 간 조정을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질병관리청 등이 보유한 투약이력,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및 예방접종이력 등을 환자 본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하였음.
 -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에 관한 12종 표준 데이터³²⁾의 연계 및 열람 서비스가 개시되었음.
- ‘나의건강기록’이 출시되기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에서는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이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2022년 이후는 건강e음)’에서는 투약이력을 제공해왔는데,

‘나의건강기록’이 출시된 이후에도 이러한 개별 공공기관 앱의 진료 등 이력 확인 기능은 계속 서비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서비스의 추가 구축 및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2억

32) ①환자정보 ②의료기관정보 ③진료의정보 ④진단내역 ⑤약물처방내역 ⑥진단검사 ⑦영상검사 ⑧병리검사 ⑨기타검사 ⑩수술내역 ⑪알레르기 및 부작용 ⑫진료기록

3,000만원을 지출하여 종전에 투약이력을 제공하여 온 ‘건강정보’ 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진료이력을 조회하는 ‘내 진료정보 열람’ 기능까지 추가된 ‘건강e음’ 앱을 2022년 8월에 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건강e음은 2023년 5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³³⁾ 콘텐츠 개편을 하였으며, 한방 추나요법 횟수 실시간 제공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가 개인 의료기록에 관한 플랫폼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고 동 플랫폼의 핵심 모바일 전달체계가 ‘나의건강기록’ 앱이라는 점에서,

‘The건강보험’ 및 ‘건강e음’ 등 개별 공공기관 앱에서 ‘나의건강기록’에서 제공하는 개인 의료기록에 관한 서비스의 운영 및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해당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공공앱인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의 경우에도 개인 마약류 투약에 관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의건강기록’ 등 보건복지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가 되지 않는바,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기록과 관련한 모바일 전달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소관 공공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결합부. (2023.5.31.) 보도자료 「내가 받은 진료가 궁금하다면,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건강e음)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하세요!」

4. 소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검토

가. 장애인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 제도 개요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및 공공기관(근로자 총수 기준)은 3.6%인데, 이러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경쟁고용을 통해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용역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³⁴⁾

3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

나. 장애인의무고용 의무 위반 공공기관 시정 필요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법정 고용 의무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4개 기관) 2023회계연도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준수하지 않았음.
 - (장애인가용부담금 납부: 9개 기관) 2023회계연도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과거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따라 장애인가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납부액은 총 4억 5,254만원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현황) 2023회계연도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정 최소 구매목표인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 3개 기관(국립암센터,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

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보원)이 기준에 미달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시정요구³⁵⁾가 있었던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 지원과 실적 점검을 통해 구매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 공공기관별 장애인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2023년)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고용률 3.6%)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실적(연간) (의무비율 1% 이상)(단위: 백만원)		
	장애인 고용률 (%, 연말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만원, 연간누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액(B)	비율 (B/A)(%)
국민건강보험공단	4.55	0	109,241	2,542	2.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8	0	70,358	1,449	2.06
국민연금공단	3.97	0	80,995	2,023	2.5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35	0	19,407	340	1.7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38	0	20,598	715	3.4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14	619	9,091	333	3.66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26	0	7,993	570	7.14
한국보육진흥원	4.55	468	5,310	332	6.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41	0	12,381	285	2.30
국립암센터	3.75	468	142,375	1,458	1.02
대한적십자사	3.38	10,537	225,251	3,842	1.7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37	0	6,529	168	2.57
한국장애인개발원	7.92	0	8,260	706	8.5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41	0	17,164	294	1.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12	0	7,924	589	7.44
국립중앙의료원	2.63	21,187	10,931	283	2.5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64	0	269	94	34.9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¹⁾	3.57	0	3,128	60	1.9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66	5,135	5,968	80	1.3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75	0	8,618	168	1.95

35)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 필요: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63	1,316	2,199	71	3.22
한국한의학진흥원	3.61	0	6,760	122	1.8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66	0	4,444	196	4.4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4.61	0	2,622	115	4.39
한국공공조직은행 ²⁾	비대상	비대상	1,377	29	2.14
아동권리보장원	4.37	1,405	9,912	144	1.4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24	0	6,568	100	1.5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22	4,119	3,488	151	4.33

주: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무고용 인원은 7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 버림(7.6→7명))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2)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으로 고용의무 비대상 기관임.

3) 고용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 공제 후(일시납 공제 등)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위와 같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한 4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차년도부터는 법정 고용 의무를 달성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출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이들 4개 기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 동일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시정요구 대상기관이었으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5.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검토

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음.³⁶⁾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관하는 개별 부처에서 경영실적 평

-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를 하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고,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매년 정책목표 및 사회 이슈 등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전년도 대비 2점 상향 조정하였음(공기업: 22→24점, 준정부기관: 20→22점).
- 2021년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지표인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하였고, 배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였음.
- 2022년에는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10점 → 20점),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축소(25 → 15점)하였고,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3점) 대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의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에 따른 가점(5점)을 신설하였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기관유형별로 6등급(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으로 구분됨.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인사조치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8항³⁷⁾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개선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나. 경영평가 결과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6월에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발표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의 평가는 2024년 7월 23일 현재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

□ 평가 결과 2023년도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C(보통) 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B(양호) 등급을 받았음.

37)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참고로 준정부기관은 D(미흡) 이하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 컨설팅을, 기타공공기관은 C(보통)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경영 컨설팅을 받음.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18-2023) >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 이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A	A	B	A	B	C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	A	A	C	B	B
	국민연금공단	B	B	C	B	B	B
	한국사회보장정보원	A	B	B	A	D	B
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¹⁾	(2022년 신규 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²⁾	B	B	C	B	A	
	한국노인인력개발원 ²⁾	B	B	B	B	C	
	한국보건복지인재원 ²⁾	B	D	C	B	C	
	한국보육진흥원 ²⁾	B	D	D	C	C	
	한국건강증진개발원 ²⁾	B	D	D	C	E	
	국립암센터	B	B	B	A	B	
	대한적십자사	C	B	B	B	C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A	A	A	A	B	
	한국장애인개발원	A	A	A	A	B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B	B	B	B	B	
	한국사회복지협의회	B	A	A	A	B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B	B	B	A	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A	A	A	A	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	A	A	A	A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	A	A	A	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C	C	B	B	A	
	한국한의학진흥원	B	B	A	A	A	
	의료기관평가인증원	C	B	B	B	B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C	B	B	B	
	한국공공조직은행	-	-	C	C	C	
	아동권리보장원	-	-	C	B	B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	B	A	

주: 1)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3년 실적부터 평가 예정(신규 공공기관)

2) 5개 기관은 2023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

3)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는 2024년 7월 현재 완료되지 아니함.

자료: 보건복지부